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2015. 9. 14. 제정

제1조 [목적]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 교환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3.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협의회는 “별표” 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 된다.

제4조 [임원]

- ① 협의회에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1인, 부회장5인 이내, 사무국장1인, 감사1인을 둔다.
- ② 회장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부회장과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부회장은 1권역 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사무국장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임명하며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 ② 회원인 지방정부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 및 의결]

-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의안의 제출]

- ① 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지방정부의 아동친화도시 관계기관 및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 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실무협의회 등]

-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체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 소속 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
-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2조 [경비부담]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 자치 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

-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6조 [가입 및 탈퇴]

-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 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 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 탈퇴 처리한다.

[별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

지역	자치단체명	비고
강원	속초시	
경기	광명시, 수원시, 안양시, 오산시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서구	
경남	-	
경북	구미시, 영주시	
대구	중구	
대전	-	
부산	금정구	
서울	성북구, 강동구, 강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송파구	
인천	-	
전남	광양시	
전북	군산시, 완주군, 전주시	
충남	아산시	
충북	음성군, 충주시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양기대

광명시
시장 양기대

홍익은

광주광역시 북구
구청장 홍익은

문동신

군산시
시장 문동신

이해석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청장 이해석

김성환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청장 김성환

박춘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청장 박춘희

염태영

수원시
시장 염태영

장욱현

영주시
시장 장욱현

이필용

음성군
군수 이필용

서대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서대원

정현복

광양시
시장 정현복

임우진

광주광역시 서구
구청장 임우진

윤순영

대구광역시 중구
구청장 윤순영

노현승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청장 노현승

이동진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청장 이동진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이춘희

복기왕

아산시
시장 복기왕

곽상욱

오산시
시장 곽상욱

김승수

전주시
시장 김승수

윤장현

광주광역시
시장 윤장현

남유진

구미시
시장 남유진

원정희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청장 원정희

차성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청장 차성수

김영배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청장 김영배

이병선

속초시
시장 이병선

이필운

안양시
시장 이필운

박성일

완주군
군수 박성일

조길형

충주시
시장 조길형